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05시 12분



목차

목차	2
자료실 - 전체	3
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(의료기관)	3

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(의료기관)

2022.04.06 조회수 1969 등록자 정장일

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('18.12.11.)·시행('19.6.12.)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이에 의료기관(장)께서는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*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교육이수 및 제출기한

- 교육대상자 : 의료기관의 종사자
- 교육이수 : 2022. 12. 31.까지
- 제출양식 : 붙임3) 취합자료
- 제출방법 : 메일)jji0907@korea.kr
- 제출기한 : 2022. 12. 31. 기일엄수

*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3항제1호의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
* 교육 동영상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-정보-연구/조사/발간자료-"긴급복지" 검색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신고의무교육 결과 제출.hwp (1873 hit/ 36.0 KB) ↓ 미리보기 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.hwp (1909 hit/ 447.9 KB) ↓ 미리보기 📄 취합자료.xlsx (1797 hit/ 19.6 KB) ↓ 미리보기
--	--

목록

<p>이전글</p> <p>2022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</p>	<p>다음글</p> <p>약국 · 한약국 자율점검표(2022년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